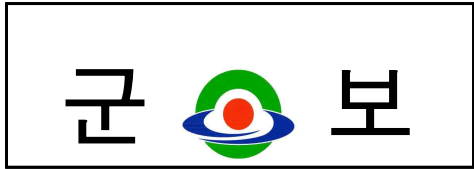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74호 2024. 11. 22.(금)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4-1623호)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예천군 공고 제2024-1625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4-1626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예천군 공고 제2024-1627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예 천 군



1. 조 례 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없는 경진보건진료소 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폐쇄가 결정되어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개정

3. 주요내용

- 경진보건진료소 삭제(안 별표 1)
 - 보 건 소(1개소) : 예천군보건소

- 보건지소(10개 지소) : 호명보건지소, 용문보건지소, 효자면·은풍면
통합보건지소, 감천보건지소, 보문보건지소,
유천보건지소, 용궁보건지소, 개포보건지소,
지보보건지소, 풍양보건지소
- 보건진료소(15개 진료소) : 송곡보건진료소, 원류보건진료소, 대제보건진료소,
석묘보건진료소, 부초보건진료소, 천향보건진료소,
수계보건진료소, 독양보건진료소, 중평보건진료소,
덕계보건진료소, 대은보건진료소, 상월보건진료소,
지보보건진료소, 우망보건진료소, 청운보건진료소,
[경진보건진료소\(삭제\)](#)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PSHIN326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0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예천군보건소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예천군 일원
호명보건지소	예천군 호명읍 오천길 23	호명읍 일원
용문보건지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1209-7	용문면 일원
효자면·은풍면 통합보건지소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100-7	효자면 및 은풍면 일원
감천보건지소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26	감천면 일원
보문보건지소	예천군 보문면 미호길 110	보문면 일원
유천보건지소	예천군 유천면 예성로 685	유천면 일원
용궁보건지소	예천군 용궁면 용개로 12	용궁면 일원
개포보건지소	예천군 개포면 용개로 1015	개포면 일원
지보보건지소	예천군 지보면 소화1길 20-7	지보면 일원
풍양보건지소	예천군 풍양면 낙상2길 26-9	풍양면 일원
송곡보건진료소	예천군 호명읍 호명로 305	송곡,한어,백송,원곡,본포리
원류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천로 874-4	두천,사부1·2,내지1·2,원류리
대제보건진료소	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376	제곡,대제,하학리
석묘보건진료소	예천군 효자면 석묘리길 4	백석,초항,고항,석묘,보곡리
부초보건진료소	예천군 은풍면 부용봉길 99-10	을곡,부초,시항,오류2리
천향보건진료소	예천군 감천면 석송로 321-5	천향1·2,관현1·2,진평1·2리
수계보건진료소	예천군 보문면 수양길 8	오신,우래1·2,수계1·2,작곡리
독양보건진료소	예천군 보문면 옥계천로 464	옥천,독양1·2,기곡1·2
중평보건진료소	예천군 유천면 중평길 99	중평,죽안,화전,송전,마천,사곡리
덕계보건진료소	예천군 용궁면 덕계1길 71	덕계,송암1·2, 월오2리
대은보건진료소	예천군 용궁면 대은길 18	대은1·2,향석1·2,무지리
상월보건진료소	예천군 지보면 상월길 135-11	상월,수월1·2,마산,만화2리
지보보건진료소	예천군 지보면 지보리길 183	지보1·2, 도장,도화2리
우망보건진료소	예천군 풍양면 청곡길 40	우망1·2,청곡1·2리
청운보건진료소	예천군 풍양면 청운1리길 42	청운1·2·3,삼강,하풍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예 천 군



1. 규칙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안 제6조~제8조, 안 제22조 ~ 제23조)

- 3국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62팀 → 3국 1실 17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59팀

· 팀 통합 및 신설 : (홍보소통과)보도지원팀, 홍보미디어팀 → **홍보팀**
(안전재난과)안전관리팀, 민방위팀 → **안전정책팀**

(보건소)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 **감염병예방팀**

· 팀 이관 : 통신운영팀 : 총무과 → 홍보소통과

온천관리팀 : 건축과 → 도시과

· 업무 이관 : 고향사랑기부제 : 재무과 → **총무과**)

시정연설 : 홍보소통과 → **기획예산실**)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PSHIN326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0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항

제7조제21호를 삭제한다.

제8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유지 관리

제2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예천운천장 관리 운영

제23조제1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총무과장)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 략) <u>14.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유지 관리</u> 15. · 16. (생 략) <u><신 설></u>	제6조(총무과장) ----- -----. 1. ~ 13. (현행과 같음) <u><삭 제></u> 15. · 16. (현행과 같음) <u>17.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 향</u>
제7조(재무과) 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u>21.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사 향</u>	제7조(재무과) ----- -----. 1. ~ 20.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8조(홍보소통과) 홍보소통과장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 다. 1. ~ 12. (생 략) <u><신 설></u>	제8조(홍보소통과)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행정통신망, 통신장비 유지 관리</u>
제22조(도시과) 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8. (생 략) <u><신 설></u>	제22조(도시과) ----- -----. 1. ~ 18. (현행과 같음) <u>19. 예천운천장 관리 운영</u>
제23조(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제23조(건축과) -----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u>13. 예천온천장 관리 운영</u>	-----. 1. ~ 12.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수요 변화 등에 대응, 유사자치단체 직급분포와 비교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71명 ※ 변동 없음

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 행	0.8%이내 (5명)	5.3%이내 (38명)	25%이내 (178명)	30%이내 (209명)	25%이내 (180명)	13.4%이상 (113명)	0.5%이내 (3명)
개정안	0.8%이내 (5명)	5.3%이내 (38명)	25%이내 (178명)	30.5%이내 (217명)	25.6%이내 (185명)	12.3%이상 (98명)	0.5%이내 (3명)
증 감	-	-	-	+0.5%	+0.6%	△1.1%	-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정무직·일반직(안 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7	1	1	4	38	178	209	180	113	3
개정안	725	1	1	4	38	178	217	185	98	3
증 감	-2	-	-	-	-	-	+8	+5	△15	-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지도직(안 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4	-	9	3	32
개정안	46	-	11	3	32
증 감	+2	-	+2	-	-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PSHIN326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0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0.8%이내	5.3%이내	25%이내	<u>30.5%이내</u>	<u>25.6%이내</u>	<u>12.3%이상</u>	0.5%이내

비 고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13%이내	87%이상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예천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771	396	16	109	39	211
정무직 계	1	1	—	—	—	—
군수	1	1	—	—	—	—
일반직 계	724	388	16	75	34	211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5급 내지 연구관	38	18	3	2	3	12
6급 이하	678	364	13	71	31	199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별정직 계	—	—	—	—	—	—
6급 상당 이하	—	—	—	—	—	—
연구직 계	11	7	—	—	4	—
연구사	11	7	—	—	4	—
지도직 계	35	—	—	34	1	—
지도관	3	—	—	3	—	—
지도사	32	—	—	31	1	—

참고 1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직급조정에 필요한 비용 ※ 총원(771명)은 변동없음

구 분	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7	1	1	4	38	178	209	180	113	3
개정안	725	1	1	4	38	178	217	185	98	3
증 감	-2	-	-	-	-	-	+8	+5	△15	-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4	-	9	3	32
개정안	46	-	11	3	32
증 감	+2	-	+2	-	-

2. 비용추계의 전제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893백만원 재정지출 증가 예상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세 입 (백만원)	-	-	-	-	-	-
세 출 (백만원)	172	175	179	182	185	893
총비용 (백만원)	172	175	179	182	185	893

※ 최근 5년간(2020~2024) 공무원 평균보수인상률 1.86%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비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금	-	-	-	-	-	-
군 비		172	175	179	182	185	893
민 간							
기 타							
합 계		172	175	179	182	185	893

5. 부대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지방행정사무관 황숙자(054-650-608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 172,608천원/연간

구 분	산출내역 (월소요액 × 12월 × 인원)	연간 총인건비 (천원)	비고
합 계		172,608	
7급 +8명	4,022천원 × 12월 × 8명 (7급 기본급 평균 2,587천원 / 각종수당 1,435천원)	386,112	
8급 +5명	3,435천원 × 12월 × 5명 (8급 기본급 평균 2,287천원 / 각종수당 1,148천원)	206,100	
9급 △15명	3,061천원 × 12월 × 15명 (9급 기본급 평균 1,998천원 / 각종수당 1,063천원)	△550,980	
학예연구사 +2명	5,474천원 × 12월 × 2명 (학예연구사 기본급 평균 3,853천원 / 각종수당 1,621천원)	131,376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예 천 군



1. 규칙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71명(안 별표)

- 집행기관의 정원 : 771명(변동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71	391	16	109	39	216	
개정안	771	396	16	109	39	211	
증 감	-	+5	-	-	-	△5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정무직·일반직(안 별표)

구 분	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7	1	1	4	38	178	209	180	113	3
개정안	725	1	1	4	38	178	217	185	98	3
증 감	△2	-	-	-	-	-	+8	+5	△15	-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직·지도직(안 별표)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4	-	9	3	32
개정안	46	-	11	3	32
증 감	+2	-	+2	-	-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PSHIN326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0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예천군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1	396	16	109	39	211
정무직 계		1	1	0	0	0	0
	정무직	1	1	0	0	0	0
일반직 계		724	388	16	75	34	211
	3급 소계	1	1	0	0	0	0
	3급	1	1	0	0	0	0
	4급 소계	4	3	0	1	0	0
	4급	1	1	0	0	0	0
	기술4급	1	0	0	1	0	0
	4급·기술4급	2	2	0	0	0	0
	5급 소계	38	18	3	2	3	12
	행정	6	5	1	0	0	0
	시설	1	1	0	0	0	0
	행정·사회복지	2	2	0	0	0	0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1	1	0	0	0	0
	행정·시설	5	4	0	0	1	0
	행정·농업연구관	1	0	0	0	1	0
	행정·사회복지·농업	2	0	0	0	0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0	0	0	0	1
	행정·농업·녹지	2	1	0	0	0	1
	행정·농업·시설	6	0	2	0	0	4
	행정·농업·수의	2	1	0	0	0	1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행정·보건·시설	1	1	0	0	0	0
	행정·시설·방송통신	1	0	0	0	1	0
	행정·농업·보건·시설	1	0	0	0	0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0	0	0	0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0	0	1	0	0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6급 소계	178	100	2	14	9	53
	행정	29	23	2	0	4	0
	세무	2	2	0	0	0	0
	사회복지	3	2	0	0	0	1
	농업	3	3	0	0	0	0
	녹지	2	2	0	0	0	0
	보건진료	3	0	0	3	0	0
	환경	3	3	0	0	0	0
	시설	15	12	0	0	1	2
	운전	2	2	0	0	0	0
	행정·세무	3	2	0	0	0	1
	행정·전산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	7	6	0	0	0	1
	행정·공업	2	2	0	0	0	0
	행정·농업	5	3	0	0	0	2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보건	2	1	0	1	0	0
		행정·환경	1	1	0	0	0	0
		행정·시설	9	8	0	0	0	1
		행정·위생	2	1	0	0	1	0
		행정·운전	1	1	0	0	0	0
		행정·학예연구사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공업·시설	1	1	0	0	0	0
		농업·녹지	1	1	0	0	0	0
		농업·수의	2	2	0	0	0	0
		보건·간호	2	0	0	2	0	0
		공업·환경	2	2	0	0	0	0
		행정·세무·사회복지	2	0	0	0	0	2
		행정·세무·농업	21	1	0	0	0	20
		행정·세무·시설	1	1	0	0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농업	4	0	0	0	0	4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0	0	0	0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행정·공업·방송통신	2	1	0	0	1	0
		행정·농업·녹지	3	1	0	0	0	2
		행정·농업·수의	2	0	0	0	0	2
		행정·농업·시설	8	1	0	0	0	7
		행정·녹지·시설	1	1	0	0	0	0
		행정·보건·간호	1	0	0	1	0	0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사무운영	1	1	0	0	0	0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7	0	0	7	0	0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3	0	0	0	0	3
		행정·세무·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0	0	0	0	1
		행정·사회복지·농업·간호	2	0	0	0	0	2
		공업·기계운영·전기운영	1	1	0	0	0	0
		방호·위생·시설관리·사무운영	1	0	0	0	1	0
		방호·운전·시설관리·사무운영	2	1	0	0	0	1
		운전·기계운영·전기운영·사무운영	1	0	0	0	1	0
		기계운영·전기운영	1	1	0	0	0	0
	7급 소계		217	124	5	22	13	53
		행정	47	32	5	0	5	5
		세무	4	4	0	0	0	0
		전산	2	2	0	0	0	0
		사회복지	8	2	0	0	0	6
		공업	2	1	0	0	1	0
		농업	3	3	0	0	0	0
		녹지	1	1	0	0	0	0
		보건	1	1	0	0	0	0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간호	4	0	0	0	0	4
		의료기술	1	0	0	1	0	0
		보건진료	4	0	0	4	0	0
		환경	1	1	0	0	0	0
		시설	22	18	0	0	3	1
		운전	7	7	0	0	0	0
		시설관리	1	0	0	0	1	0
		행정·세무	7	4	0	0	0	3
		행정·전산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	19	5	0	0	0	14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11	9	0	0	0	2
		행정·녹지	1	1	0	0	0	0
		행정·환경	1	0	0	0	0	1
		행정·시설	16	16	0	0	0	0
		행정·방재안전	1	1	0	0	0	0
		행정·위생	3	2	0	0	1	0
		전산·방송통신	2	2	0	0	0	0
		공업·환경	1	1	0	0	0	0
		공업·방송통신	1	1	0	0	0	0
		농업·녹지	2	2	0	0	0	0
		농업·수의	1	1	0	0	0	0
		보건·의료기술	2	1	0	1	0	0
		보건·간호	11	0	0	11	0	0
		간호·보건진료	2	0	0	2	0	0
		환경·시설	1	0	0	0	1	0
		기계운영·전기운영	1	0	0	0	1	0
		행정·세무·농업	14	0	0	0	0	14
		행정·농업·녹지	2	1	0	0	0	1
		행정·농업·수의	2	0	0	0	0	2
		행정·농업·시설	1	1	0	0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1	0	0	1	0	0
		환경·운전·전기운영	1	1	0	0	0	0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0	0	1	0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8급 소계		185	95	4	26	7	53
		행정	38	30	2	0	2	6
		세무	1	1	0	0	0	0
		사회복지	10	7	0	0	0	3
		공업	3	1	0	0	2	0
		농업	2	2	0	0	0	0
		녹지	1	1	0	0	0	0
		보건	4	1	0	3	0	0
		간호	8	0	0	0	0	8
		보건진료	3	0	0	3	0	0
		환경	3	3	0	0	0	0
		시설	22	13	0	0	2	7
		방송통신	1	0	1	0	0	0
		운전	5	4	1	0	0	0
		기계운영	1	1	0	0	0	0
		행정·세무	6	1	0	0	0	5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전산	1	1	0	0	0	0	
		행정·사회복지	9	3	0	0	0	6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21	6	0	0	0	15	
		행정·녹지	1	1	0	0	0	0	
		행정·환경	1	0	0	0	0	1	
		행정·시설	7	5	0	0	1	1	
		행정·방재안전	2	2	0	0	0	0	
		행정·방호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공업·시설	2	2	0	0	0	0	
		농업·녹지	3	3	0	0	0	0	
		보건·간호	7	0	0	7	0	0	
		보건·환경	1	1	0	0	0	0	
		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기계운영·화공운영	1	1	0	0	0	0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환경·운전	2	2	0	0	0	0	
		의료기술·간호	7	0	0	7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3	0	0	3	0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2	0	0	2	0	0	
	9급 소계		98	45	2	9	2	40	
		행정	19	9	2	0	2	6	
		사회복지	7	5	0	0	0	2	
		농업	8	4	0	0	0	4	
		보건	2	0	0	2	0	0	
		방호	0	0	0	0	0	0	
		환경	2	2	0	0	0	0	
		시설	8	3	0	0	0	5	
		방재안전	1	1	0	0	0	0	
		위생	0	0	0	0	0	0	
		운전	7	5	0	2	0	0	
		행정·세무	15	3	0	0	0	12	
		행정·사회복지	10	2	0	0	0	8	
		행정·농업	1	1	0	0	0	0	
		행정·보건	1	0	0	1	0	0	
		행정·환경	3	2	0	0	0	1	
		행정·시설	6	4	0	0	0	2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녹지·시설	2	2	0	0	0	0	
		보건·사회복지	1	0	0	1	0	0	
		보건·의료기술	3	0	0	3	0	0	
		행정·세무·환경	0	0	0	0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전문경력관 소계		3	2	0	1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 교육교관)	1	0	0	1	0	0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0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6급 상당(비서)		0	0	0	0	0	0		
연구직 계		11	7	0	0	4	0		
	학예연구사	6	6	0	0	0	0		
	기록연구사	1	1	0	0	0	0		
	농업연구사	4	0	0	0	4	0		
지도직 계		35	0	0	34	1	0		
	농촌지도관	3	0	0	3	0	0		
	농촌지도사	32	0	0	31	1	0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전산	1	1	0	0	0	0	
		행정·사회복지	9	3	0	0	0	6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21	6	0	0	0	15	
		행정·녹지	1	1	0	0	0	0	
		행정·환경	1	0	0	0	0	1	
		행정·시설	7	5	0	0	1	1	
		행정·방재안전	2	2	0	0	0	0	
		행정·방호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공업·시설	2	2	0	0	0	0	
		농업·녹지	3	3	0	0	0	0	
		보건·간호	7	0	0	7	0	0	
		보건·환경	1	1	0	0	0	0	
		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기계운영·화공운영	1	1	0	0	0	0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환경·운전	2	2	0	0	0	0	
		의료기술·간호	7	0	0	7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3	0	0	3	0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2	0	0	2	0	0	
	9급 소계		100	47	2	9	2	40	
		행정	21	11	2	0	2	6	
		사회복지	7	5	0	0	0	2	
		농업	8	4	0	0	0	4	
		보건	2	0	0	2	0	0	
		방호	0	0	0	0	0	0	
		환경	2	2	0	0	0	0	
		시설	8	3	0	0	0	5	
		방재안전	1	1	0	0	0	0	
		위생	0	0	0	0	0	0	
		운전	7	5	0	2	0	0	
		행정·세무	15	3	0	0	0	12	
		행정·사회복지	10	2	0	0	0	8	
		행정·농업	1	1	0	0	0	0	
		행정·보건	1	0	0	1	0	0	
		행정·환경	3	2	0	0	0	1	
		행정·시설	6	4	0	0	0	2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녹지·시설	2	2	0	0	0	0	
		보건·사회복지	1	0	0	1	0	0	
		보건·의료기술	3	0	0	3	0	0	
		행정·세무·환경	0	0	0	0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전문경력관 소계		3	2	0	1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 교육교관)	1	0	0	1	0	0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0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6급 상당(비서)	0	0	0	0	0	0		
연구직 계		11	7	0	0	4	0		
	학예연구사	6	6	0	0	0	0		
	기록연구사	1	1	0	0	0	0		
	농업연구사	4	0	0	0	4	0		
지도직 계		35	0	0	34	1	0		
	농촌지도관	3	0	0	3	0	0		
	농촌지도사	32	0	0	31	1	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